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2074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6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재산세 5,790,490원의 부과처분 중 5,431,090원 및 지방교육세 750,180원의 부과처분 중 690,990원은 이를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다가 원고의 주장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라는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받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이러한 면제의 효과를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내용을 단지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위 시행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잡종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에서 제외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7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른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22조는 과표현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05년 보유세제 개편 당시 도입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조세저항의 완화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그 입법 취지로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22조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그 자체와 동일할 것이나,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증·개축 및 멸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 자체에 현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22조의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및 다른 법률조항들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토지의 현황이 직전 연도와 달리 변화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의 상한을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9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사경화

판사 김성식